##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 춘 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폐지)

오늘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이 수많이 창설되였다. 경제개발구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우리 당의 대외경제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자면 경제개발구에서의 장려 및 특혜제도를 바로 수립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발구 장려 및 특혜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가 중시하는 부문에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일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3 500여개가 넘는 경제개발구들이 창설운영되고 이를 위하여 매개 국가들은 경제개발구를 창설함에 있어서 장려하는 부문을 법적으로 규제해놓고 외국의 투자가들이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하고있다.

국가가 중시하려는 부문에로 외국투자를 유도하자면 반드시 그 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 대하여 특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가의 수입은 외국투자가들에게 주는 특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때문이다. 외국의 투자가들은 자본수입국의 장려부문 그자체에 흥미를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 부문에 주는 특혜로 인한 리윤폭에 더 관심이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가에게 특혜를 준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에게 경제무역활동에 유리한 조건 즉 편의를 보장해준다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경제무역활동의 편의를 보장해줄수록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외국투자가들이 얻게 되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자본수입국에 바치는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자본수입국들은 장려하는 부문을 법적으로 지정해주는것과 함께 그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보장해줄 각종 특혜들에 대하여서도 법적으로 규 제해주고있다.

공화국정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경제개발구 세금규정》등 여러 법과 규정들을 통하여 경제개발구에서의 장려 및 특혜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경제개발 구에서의 외국투자환경과 조건을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지어주고있다.

경제개발구의 장려 및 특혜제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기업소득세의 감면,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통신보장문제 등이다.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토지리용과 관련 한 특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우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업용토지라는것은 입주기업이 사용할수 있게 개발된 토지이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기본은 토지개발이다. 즉 경제개발구의 개발지역에서 토지정리를 먼저 진행한 다음 상수, 하수, 오수, 전기, 난방, 통신과 같은 하부시설을 갖추어놓는것이다. 문제는 개발된 모든 토지가 다 기업용토지가 아니라는것이다. 그것은 경제개발구가 산업, 봉사, 관광, 오락 등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기때문이다. 개발된 토지가운데서 입주기업이 사용하게 될 토지가 바로 기업용토지이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가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는것은 경제개발구의 토지면적이 제한되여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토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경제개발구에서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경제개발구는 산업구역과 봉사구역, 생활구역, 오락구역 등으로 갈라 개발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들이들어오게 될 산업구역인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하고 그 나머지토지를 가지고 봉사구역과 생활구역, 오락구역 등으로 갈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는 서로 다른 특혜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가 제공되도록 한다는것은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분야와 용도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토지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납부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특혜를 주어야 한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기간이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기관이 해당 토지에 대한 리용권을 토지임차자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받는 값이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기업용토지인 경우 토지임대기간을 투자가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해주는것, 토지임대료의 범위를 토지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설정해주는것, 토지임대료를 투자가의 요 구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지불방식으로 지불하되 그의 요구에 따라 지불단계를 여러 단 계로 설정해줄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도록 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하는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활동에서 토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투자가들은 경제개발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토지의 위치선택에 상당한 주의를 돌리게 된다. 특히 투자하려는 부문을 고려하여 토지위치를 선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실례로 새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과학연구기관들이 밀집되여있는 지역에 기업위치를 정하려 할것이며 중계수송업이나 보관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주로 교통이 유리한 지역에 기업위치를 정하려 하는것 등을 들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리용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것은 경제개발구의 면적이 제한되여있는 대신 해당 토지의 위치선택권을 놓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우선적리용권을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도록 한다면 국가가 중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해 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주도록 하는것도 이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주는 특혜로 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하는 대신 얻게 되는 수입의 일부를 토지임차자가 국가에 지불하는 료금이다.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사용료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가지불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로는 토지임대기판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자,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자, 토지를 재임차한자, 토지를 출자몫으로 출자한 합영기업, 합작기업이 된다.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매해 납부하여야하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 정하는것만큼 국가가 중시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 들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일정한 기간동안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둘째로, 기업소득세와 관련한 특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기업소득세는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이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할수 없다. 그것은 모든 외국투자기업들의 리윤폭이 소득세률에 따라 좌우되며 해당 투자기업의 창설목적과 방식들도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우선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준다는것은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기업소득세를 받지 않는다는것이며 기업소득세를 덜어준다는것은 면제기간이 지난해로부터 정해진 기간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액중에서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주도록 하는것은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이 보다 오래동안 기업활동을하는것이 자본수입국에 유리하기때문이다.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들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특혜를 줄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실례로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들인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기초시설건설부문에 투자한 기업들과 생산부문에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에 서로 다른 세금감면 및면제기간을 설정해준다면 장려하는 부문에로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백히 규제해야 한다는것이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들은 그 리유가 합법적이여야 하는것만큼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와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해산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경우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이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할수 있다.

투자가들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활동과정에 얻은 소득과 기타소득,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을 외국투자가의 본국이나 제3국에 내가지 않고 이미 창설운영하는 기업의 등 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데 투자할수 있다.

이것은 자본수입국에 대한 투자량을 늘이는데서 매우 효과적인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감면 및 면제특혜를 적용할수 있다. 특히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이 하부구조건설부문에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하였던 기업소득세의 전액을 반환해주도록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기업들이 재투자한 대상을 일정한 기간(례하면 5년) 운영하지 못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소득세를 다시 바치도록 해야 한다.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셋째로, 개발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에서의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한 기업으로서 개발사업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고있는 토지정리를 진행한다. 토지정리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대신투자비용회수기일이 오랜것으로 하여 그것을 담당한 기업은 자금부담을 크게 받게 된다. 만일 개발기업에 여러가지 특혜를 부여한다면 개발기업은 자금부담을 일정하게 덜거나리윤회수를 앞당길수 있을것이다.

우선 개발기업에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부여할수 있다. 관광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지와 관광대상을 개발하여 꾸리고 선전과 관광을 조직운영하는 기업이며 호텔업은 려행자들을 받아 묵어가도록 하는 사업을 전문으로하는 기업이다. 이 대상들은 리윤의 폭이 크고 자금회수가 빠른것으로 하여 경쟁성이 강하다. 그런것만큼 개발기업들에 이 대상들에 대한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면 개발에 든 자금을 빨리 회수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개발기업들이 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과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수 있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은 경제개발구에서의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에 리용되고 공공시설운영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므로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르는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기업의 재산이나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개발기업이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들이민원가와 예정리윤을 빨리 회수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넷째로, 관세와 관련한 특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관세는 해당 나라의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며 관세경계선은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나라가 세금을 받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실시한다. 특혜관세는 특정한 나라 및 지역

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특별히 낮은 세률이 적용된 세금이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자금의 부담을 덜게 되므로 생산물의 원가를 줄여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리윤이 차례지게 된다.

우선 특혜관세적용대상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관세면제대상에는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 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 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들을 포함시킬수 있다.

가공무역은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 반제품, 부분품을 가공, 조립한 다음 그것을 다시 수출하여 외화수입을 얻는 경제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원료, 자재, 반제품, 부분품을 들여다 그의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료를 받는 임가공무역과 원료, 자재, 반제품, 부분품을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다음 가공, 조립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수출무역이 있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들여다 그대로 또는 선별, 재포장하거나 일정한 기간 보관하였다가 다른 나라에 내가는 무역이며 보상무역은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같은 액수 의 상품을 맞바꾸는 무역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들과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 기업의 생산 및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무관세를 실시하는것은 공인된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또한 특혜관세률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하는 물자들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있는데 낮은 관세률을 적용하든가 또는 관세면제를 적용할수 있다.

이밖에도 경제개발구에서는 물자의 반출입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실시하는것, 우편, 전화, 확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하는것과 같은 장려 및 특혜 제도들을 실시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실시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대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진행해나가도 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경제개발구장려, 특혜제도